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가. 제안이유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버스운영, 이용료 징수, 면제 및 환불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안 제3조)

다. 이용료 징수, 면제, 환불(안 제4조~제6조)

라.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안 제7조~제8조)

마. 위탁운영(안 제9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버스 운영, 이용료 징수, 면제 및 환불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제48조1)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현재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은 차량 제작 및 구매, 정류소를 설치하는 중이며, 차량은 10월경 취득할 예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행 전에 조례를 제정²⁾할 필요가 있음.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안 제3조), 이용료 징수, 면제 및 환불(안 제4조~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 책임(안 제7조~제8조), 위탁운영(안 제9조) 등을 규정함.

1)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조(제목)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문화 발전 -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 등 관련 용어 정의
제3조(운영)	- 종사원 및 안내원 배치, 운영내용 사전 공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이용 방법 및 예약 방법, 운행 불가 시 조치사항 등 운영사항 규정
제4조(이용료 징수)	- 이용 요금표(별표1) 규정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 면제 및 감면 대상자 규정
제6조(이용료의 환불)	- 전액 및 일부 환불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 시설 훼손 및 분실 시 배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위탁운영)	- 위탁 기간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사원 및 안내원 배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운행 불가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안 별표1의 이용요금은 ‘마포순환열차버스 로드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³⁾를 토대로 5,500원으로 산정⁴⁾하였음.
- 마포 전역을 연결한 마포순환열차버스 노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때, 정류소 주변을 충분히 돌아보고 환승할인 없이 다음 정류소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경우 요금이 총 14,300원 발생함. 이와 비교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요금은 5,500원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3) 마포순환열차버스 로드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 마포순환열차버스 설문조사 결과 희망요금은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28개 투어버스 사업의 운임요금을 조사한 결과 최소 1,20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평균 6,364원으로 조사되었음. 사업 수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임요금은 28개 투어버스 평균 운임인 6,364원보다 다소 적은 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하였음.

4) 2024.5. :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료 결정)

보임. 향후, 단체 이용객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체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타 자치단체 시티투어버스 이용료 현황 >

(단위 : 원)

자치단체	구 분	성인(19세이상)		청소년 (13~18세)	어린이 (6~12세)	비 고
		어 른	경로자 (65세이상)			
마포구	개 인	5,500	3,000	3,500	3,000	5세이하 무료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다등이 50% 감면)
	단 체	할인없음				
정읍시	개 인	5,000	2,500	2,500	2,500	6세이하 무료 (단체 15인이상)
	단 체	4,000	2,000	2,000	2,000	
김천시	개 인	5,000	2,500	2,500	2,500	6세이하 무료 (단체 30인이상)
	단 체	3,000	1,500	1,500	1,500	
군산시	개 인	5,000	2,500	2,500	2,500	장애인, 군인 2,500원 (단체 20인이상)
	단 체	4,000	2,000	2,000	2,000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시설 훼손 및 분실했을 때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위탁 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마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관련 법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을 통해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증대 시킴으로써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정류장 주변의 시설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된 관광 관련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 운영 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포함하여 정류소, 전기차량 충전소 및 제반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노선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사업 운영을 시작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소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⁵⁾ 마포순환열차버스 전기차량 충전소 내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5) 최근 인천 아파트, 서울 지하철 3호선 내 특수차량 등에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붙임 1

마포 순환열차버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마포구 주요 관광지
- 사업내용: 마포구 주요 관광지점을 잇는 랜드마크 관광순환버스 도입
- 운영계획(안)
 - 운행방식: 순환형 시티투어
 - 운영주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이 용 료: 성인 1인 5,500원(1일권)
 - 운행대수: 소형 전기버스 3대(예비차량 1대 별도)
 - 노선현황: (길이) 28.6km (정류소) 18개 (운영시간) 화~일 10:00~22:00 월설추석일 휴무 (소요시간) 120분 (배차간격) 40분 (운영횟수) 1일 16회



① R2(홍대걸고싶은거리)→② 경의선숲길공원(홍대입구역3번출구)→③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④ 망원&월드컵시장(망리단길)→⑤ 망원한강공원(서울함공원)→⑥ 서울월드컵경기장(마포농수산물시장)→⑦ 하늘공원→⑧ 메타세쿼이아길(난지테마관광숲길)→⑨ 난지천공원(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⑩ 난지캠핑장→⑪ 마포반려동물캠핑장(난지한강공원)→⑫ 서울양화나루와잠두봉유적→⑬ 마포새빛문화숲→⑭ 마포용강맛개비길→⑮ 도화갈매기골목(공덕역9번출구)→⑯ 경의선숲길공원(염리동)→⑰ R6(레드로드광장,상수역)→⑱ R4(홍대축제거리)→① R2(홍대걸고싶은거리)

○ 사업비(2024년): 844,231천원

- 충전기 설치 및 홍보마케팅 등(473,200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371,031천원)

□ 추진경과

- 2022. 11.~2023. 6. : 로드맵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실시
- 2023. 10. 31. :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 2023. 11. 8.~9. : 마포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원안의결)
- 2023. 11. 10. : 마포순환열차버스 위·수탁 협약체결(마포구시설관리공단)
- 2023. 12. 4. : 한정면허 발급 및 구매보조금 교부(시 → 구)
- 2024. 3. ~ : 마포순환열차버스 차량 제작·구매 추진
 - 2024. 5. : 제2차 마포구 공공디자인 심의
- 2024. 3. ~ : 마포순환열차버스 노선변경 및 정류소 설치 추진
 - 2024. 4. ~ 7. : 마포순환열차버스 정류소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6. : 제3차 마포구 공공디자인 심의
- 2024. 4. ~ 9. : 마포순환열차버스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추진
- 2024. 5. ~ :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현안사항

- 마포순환열차버스 차량 제작·구매 추진 ※ 계약일자: 2024. 3. 21.
 - 구매대상: 전기중형승합 특수제작 차량 3대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주요내용: 23인승 전기중형승합 차량(신차)을 시티투어용으로 설계 및 제작(자기인증)
 - 사업비: 950,000천원
- 마포순환열차버스 정류소 제작·설치 추진
 - 사업대상: 마포순환열차버스 정류소 18개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주요내용: 정류소 설치지역 제반현황 조사 및 정류소 제작·설치
 - 사업비: 500,000천원

□ 향후일정

- 2024. 10. ~ 12. : 마포순환열차버스 차량 출고 및 개조, 안전검사 등
- 2024. 9. ~ 11. : 마포순환열차버스 정류소 제작·설치 추진
모바일앱 등 운영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추진, 시설
관리공단 조직·인력 구성, 차고지 등 부대시설 설치 등
- 2024. 12. ~ : (시범)사업 운영

붙임 2

전국 주요도시 투어버스 운임 요금

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시티투어코스명	유형	이용요금 (성인기준/원)	운행정보	시작	종료	배차	소요	회차	정류장
1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티투어버스	순환형	5,000	토, 일, 공휴일	9:45	17:58	45	103	7회	11개
2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투어	순환형	5,000	매일	9:30	16:10	60	110	4회	11개
3	경기도	가평군	가평순환버스A코스	순환형	8,000	매일	09:00	19:35	60	90	12회	11개
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티투어	순환형	3,000	화, 수, 목, 금, 토, 일	09:20	17:20	70	130	6회	10개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심순환코스	순환형	10,000	매일	09:00	17:50	60	170	7회	12개
6	대전광역시	동구	남부순환투어	순환형	5,000	토, 일	9:20	18:00	200	140	3회	6개
7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순환투어	순환형	5,000	토, 일	9:40	18:20	200	140	3회	6개
8	부산광역시	없음	레드라인	순환형	15,000	수, 목, 금, 토, 일	09:45	18:45	50	130	9회	12개
9	부산광역시	없음	그린라인	순환형	15,000	수, 목, 금, 토, 일	09:30	18:30	50	130	9회	12개
10	부산광역시	없음	오렌지라인	순환형	15,000	수, 목, 금, 토, 일	09:20	18:40	60	140	9회	12개
11	울산광역시	남구+동구	장생포 대왕암 코스	순환형	6,000	수, 목, 금, 토, 일	09:30	18:50	60	75	9회	6개
12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코스	순환형	6,000	수, 목, 금, 토, 일	09:30	18:10	50	80	9회	17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바다노선	순환형	10,000	수, 목, 금, 토, 일	10:00	18:35	60	155	7회	8개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동구	인천레트로노선	순환형	5,000	수, 목, 금, 토, 일	10:00	18:35	60	105	6회	8개
15	전라남도	곡성군	깨비버스(곡성읍권역)	순환형	2,000	수, 목, 금, 토, 일	10:00	17:20	60	20	7회	7개
16	전라남도	곡성군	추추버스(압록권역)	순환형	2,000	수, 목, 금, 토, 일	10:30	17:55	120	55	4회	6개
17	전라남도	담양군	시내	순환형	2,000	매일	10:00	17:45	60	45	6회	10개
18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	순환형	2,000	금, 토, 일	09:50	17:30	210	100	3회	7개
19	전라남도	순천시	도심투어	순환형	5,000	화, 수, 목, 금, 토, 일	10:20	17:31	150	139	3회	9개
20	전라남도	여수시	2층주간코스	순환형	5,000	매일	10:30	17:05	60	35	6회	9개
21	전라남도	화순군	설렘화순 적벽 서틀버스(화순)	순환형	7,000	화, 수, 목, 금, 토, 일	10:25	15:25	180	115	2회	4개
22	전라남도	화순군	설렘화순 적벽 서틀버스(이서)	순환형	5,000	화, 수, 목, 금, 토, 일	10:00	17:00	40	85	7회	3개
2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시티투어	순환형	2,000	토, 일, 공휴일	9:50	19:20	120	480	2회	7개
24	전라북도	익산시	순환형	순환형	4,000	토, 일	10:00	17:50	60	50	7회	7개
25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시티투어 880번버스	순환형	1,200	매일	09:00	21:35	40	65	18회	12개
26	제주도	제주시	해안코스	순환형	12,000	매일	9:00	20:00	60	50	8회	8개
27	제주도	제주시	도심코스	순환형	12,000	매일	9:20	17:52	90	100	6회	17개
28	충청남도	아산시	아트밸리 in Asan 순환 코스	순환형	4,000	금, 토, 일	10:00	18:20	30	80	5회	7개

※ 출처: 마포순환열차버스 로드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관광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105관련
----------	----------

발의년월일 : 2024. 8. 30.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제정안의 감면 범위에 적절하지 않은 적용 조문을 수정하고,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구민들의 순환열차버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함. 또한 민법상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 해석에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료 감면 규정 수정 및 추가 (제5조)
- 나. 민법상 문구 수정 (제8조)
- 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제8조 중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4. 5. (생략)</p> <p><신 설></p>	<p>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 ----- ----- -----.</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4. 5. (현행과 같음)</p> <p>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p>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중 차량 및 버스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

-----.